##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65 발의연월일: 2024. 9. 10.

발 의 자: 장경태 · 민병덕 · 김승원

부승찬 • 강선우 • 황명선

서영교 · 김동아 · 김병기

김용민 · 박주민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도당에 두는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설치·운영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부 시·도당은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중앙당에 100명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시·도당은 총 100명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처럼 시·도당이 각 당의 내부조직으로 두는 정책연구소의 경우 중앙당의 정책연구소와 달리 정원 외 인력운영이 인정되지 않으며 경 상보조금 역시 별도로 배분되지 않아 시·도당에 배정된 정원과 국고 보조금을 쪼개어 운영을 지속하여야 하는바, 정당의 운영과 내실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일정 비율 이상의 경상보조금을 배분·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각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당의 정책 발굴·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정당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법률 제 호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30 이상은 정책연구소"를 "20 이상은 중앙당에 설치하는 정책연구소"로, "배분"을 "설치하는 정책연구소"로,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  |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  |
| ②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           | ②                      |  |  |
| 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         |                        |  |  |
| 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 <u>2</u> 0 이상은 중앙당에 설치 |  |  |
|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         | 하는 정책연구소               |  |  |
| 의 설치·운영)에 의한 정책연          |                        |  |  |
| 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                        |  |  |
|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                        |  |  |
| <u>배분</u> ·지급하여야 하며, 100분 | 설치하는 정책연구소에, 100분      |  |  |
| 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 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     |  |  |
|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       |                        |  |  |
| 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                        |  |  |
| 한다. 이 경우 여성정치발전을          |                        |  |  |
|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                        |  |  |
|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          |                        |  |  |
| 다.                        |                        |  |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